

規定을 삭제하고 學生體育館을 一般에게 開放使用하게 할 수 있는 根據規定을 新設하는 것이고 教育規則에 委任하는 事項을 보다 명확하게 規定하는 것입니다.

기타 일부 不合理한 文句를 整備하는 것입니다.

改正根據는, 서울特別市松坡區等13個區設置와 區의管轄區域變更에 관한規程 第1條와 地方自治法 第15條를 根據했습니다.

改正條例案은 別添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蘇中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서울特別市學生體育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1. 개정경위

본 조례(안)은 199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5월 1일 소관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정사유

학생체육관의 설치목적으로 업무수행 사항과 일치시키고, 기관명칭을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으로 하며, 소재지를 법정 주소지로 하고, 기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학생체육관의 기능중 “체육교사연수, 체육특기학생훈련”을 “체육교사연수 및 체육특기학생훈련지원”으로 하고, 기관명칭을 현행 “학생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으로 변경함(안 제1조)
- 학생체육관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3호”로 하여 법정주소와 일치시킴(안 제2조)
- 정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체육관을 일반에게 개방·사용하게 할 수 있

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교육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 기타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5조제2항등)

4.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367호, '87.12.31)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등의 설치)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2조에서 학생체육관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367호, '87.12.31 공포) 제1조에 의거 강동구의 일부가 송파구로 구역이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 현행 조례 제4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을 삭제한 것은 공무원의 정원은 교육청 전체로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삭제한 것이며,
-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학생체육관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는」규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안) 제1조, 제5조 및 제6조는 일부 규정을 자구수정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학생체육관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198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송파구등13개구설치와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개정하는 것은 문체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내용상 문체점이 없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